

# 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0차/제정 2023-11-2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부패 예방을 위하여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위험”이란 공사가 윤리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 또는 윤리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통위험 : 인사, 재무, 회계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영관리 관점의 위험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
  - 나. 고유위험 : 조직의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관리 관점의 위험
2.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란 윤리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직 운영, 전사적 관리 프로세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최고관리자”는 공사의 윤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제4조의 사장을 말한다.
4.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를 총괄하고 전담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을 말한다.
5. “전담조직”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통제·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가. 총괄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 나. 관리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개별 공통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주도하여 통제활동을 담당하는 본사 부서
6. “실행부서”란 윤리위험 예방·통제 목적의 리스크 맵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청렴윤리위원회”란 윤리강령 제35조에 따른 공사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말한다.
8. “리스크 맵”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전 과정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도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며,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윤리위험 통제를 위하여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윤리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험관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해당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윤리위험 통제·관리조직

**제5조(구성)** 공사의 윤리위험 통제·관리조직은 최고관리자, 윤리위험관리자, 청렴윤리위원회, 전담조직, 실행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 제6조(최고관리자)** ① 최고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재정적 지원,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을 위해 내·외부 구성원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최고관리자는 공사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진다.

- 제7조(윤리위험관리자)** ①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를 총괄하며, 전담조직의 역할 수행과 권한 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 총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소관부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진다.
- ③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시정 등의 조치를 최고관리자 또는 감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도의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2. 공통위험 식별 및 평가
  3. 관리부서 및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 요구, 모니터링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최고관리자 및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
    - 가.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및 운영 결과
    - 나. 중대 윤리위험 발생 현황 및 조치방안
    - 다. 리스크 맵 구축 및 모니터링 결과
  5. 청렴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6.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의 정비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 활동 지원
2. 공통위험의 통제·관리 활동

④ 전담조직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험 통제·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 윤리위험 관리 수행 관련 정보 접근 및 관계 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
2. 윤리위험 행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감사 및 부서장의 관리 요구
3. 윤리위험 관리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요구

⑤ 전담조직 구성원은 윤리위험 통제·관리 관련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실행부서)** ①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부서 윤리환경 진단
2.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활동
3. 모니터링 및 평가
4. 리스크 맵 작성 및 관리

② 실행부서의 장은 윤리위험 통제·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서별 윤리위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장 윤리위험 통제·관리 절차

**제10조(위험관리 절차)** 윤리위험을 통제하여 예방하는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별표2와 같다.

1. 위험식별 : 윤리환경 진단을 통하여 공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윤리위험을 식별·도출하는 단계
2. 위험평가 : 식별된 윤리위험의 영향력과 발생가능성을 측정하여 윤리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
3. 통제활동 : 윤리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4. 모니터링 :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성 점검 및 평가를 하는 단계

**제11조(위험식별)** ① 공사 임직원은 윤리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 ② 윤리위험은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임직원 행동기준을 고려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전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통 위험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 ④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환경을 진단하여 부서 고유위험을 주기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험 발생 시 미치는 영향 정도와 발생가능성을 계량화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사의 공통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공통위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실행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서에서 식별한 고유위험의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윤리위험 관련 환경적 변화 및 타기관 중대비위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공통위험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실행부서의 장에게 고유위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통제활동)** ①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매년 식별한 공통위험 및 고유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제활동을 설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2. 사규, 업무기준 등 관련 제도 및 업무시스템의 개선
  - 3. 법령 및 규정 안내, 교육 등 직원 인식 개선
  - 4. 기타 윤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활동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와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활동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잔여위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활동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리스크 맵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 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전사의 리스크 맵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윤리위험 통제·관리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부서 리스크 맵 이행 여부 등 자가 점검
  - 2. 내부심사원의 리스크 맵 심사 평가
  - 3. 내부 인식도 설문조사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수행을 위해 내부심사원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담당자를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원은 본인 소속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리스크 맵 구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최고관리자 및 청렴윤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15조(제재 및 인센티브)** 공사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윤리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인사규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① 공사는 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의 보호·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7조(교육)** ①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윤리경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윤리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서·담당자, 관리자 직급 대상 특별 교육(필요시)
  2. 전담조직 구성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화 및 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리스크 맵 운영 결과 등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3.11.22.)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